

# 계 약 서

정화조 보수공사

풍납씨티극동 아파트

 **한국환경정화주식회사**

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2길 58(구의동)

☎(02) 3437 - 6595

## 정화조 보수공사 계약서

정화조 보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풍납씨티극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이하 “갑”) 과 한국환경정화(주) 대표이사(이하 “을”) 가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### 제1조 【계약대상물】

1. 단 지 명: 풍납씨티극동 아파트
2. 소 재 지: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(풍납동)
3. 시 설 물 명: 단독정화조
4. 정 화 조 방 식: 살수여상

### 제2조 【목 적】

본 계약은 “갑” 과 “을” 사이의 계약을 체결함은 필요한 조건과 규정을 준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

### 제3조 【공사 범위】

수중펌프[3HP-1대] 교체  
체크밸브[80A-2EA] 교체,  
배관 호스타입[80A] 변경설치.



### 제4조 【공사 기간】

2020년 07월 20일 ~ 2020년 07월 20일

### 제5조 【공사 금액】

일금 일백일십구만구천원정(W1,199,000) - 부가세 포함.

### 제6조 【대금 결제】

- ① “을” 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 하였을 때 “갑” 에 게 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있다.
- ②공사 완료 후 “갑” 은 “을” 에게 30일 이내에 현금 결제하기로 한다.

## 제7조 【준공 검사】

- ① “을” 은 공사 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를 “갑” 에게 제출하고 “갑” 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.
- ② “갑” 이 공사에 대하여 부실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하자가 있을 시 “을” 은 지체 없이 보수하여 “갑” 에게 준공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.

## 제8조 【계약 해지】

“갑” 은 “을” 이 다음 각 호에 각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“을” 은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“갑” 이 손해를 당하였을 시 “을” 은 “갑” 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- ①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까지 공사를 착수 하지 않았을 때.
- ②공사가 공정표에 의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여 공기 내에 완료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.
- ③ “갑”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때.
- ④ “을” 이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.

## 제9조 【계약 총칙】

- ① “을” 은 계약내역과 현장설명서 및 공정표에 의하여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.
- ②본 공사는 “갑” 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.
- ③ “을” 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한다.
- ④ “을” 은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“을”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.
- ⑤공사완료 후 1년간 하자보증을 하며 공사 총액 10%의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.

제10조 【기 타】

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“갑”의 의견에 따른다.

본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07월 17일

“갑”

주 소: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(풍납동)

단 지 명: 풍납씨티극동 아파트

사업자NO: 215-82-61148

입주자대표회의

회 장: 강 용 석



“을”

주 소: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2길 58(구의동)

상 호: 한국환경정화주식회사

사업자NO: 207-81-54197

대표이사: 서 정 열

